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9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2월 26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관련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9의3호에 “안전취약계층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“재난약자”를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“재난약자”를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12호 및 제15조제2호).
- “재난취약계층”을 “안전취약계층”으로 수정함(안 제57조 제목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15조제2호 중 “재난약자를”을 “안전취약계층을”로 한다.

안 제57조의 제목 “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을 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“재난약자”란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,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 대응과 대비에 안전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</u></p> <p>3. ~ 9. (생략)</p>	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재난약자를 고려한 동원명령·대피명령·통행제한 -----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5조(대책본부의 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 안전취약계층을 -----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생략)</p>	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7조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동원명령、대피명령、통행제한”을 “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、대피명령、통행제한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7조의 제목 “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을 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